

〈자료집〉

##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 1. 조선·대한제국이 일본국과 맺은 조약

- 주) 1. 아래 목록은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4 《舊韓末條約彙纂(1876-1945)》 上 ; 1965 《舊韓末條約彙纂(1876-1945)》 中 ; 外務省條約局, 1934 《舊條約彙纂》 第三卷 (朝鮮及琉球之部) 에 실린 조약 및 관련문서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2. 조인연월일은 1895년까지는 음력으로, 그 이후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조선·대한제국의 조약명칭은 《高宗純宗實錄》을 1차로, 위 《舊韓末條約彙纂》을 2차 기준으로 하였다. 그래도 조약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 《舊條約彙纂》의 일본국 조약명을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4. 양국의 조약명이 상이할 경우 / 로 구분하였다.
5. 조약명의 ( )는 異名, 혹은 해당 조약의 부제이다.

조인연월일	조약명	원문언어	비고
1876.02.03	修好條規(강화도조약)	漢日	자료1
1876.07.06	修好條規附錄	漢日	
1876.07.06	通商章程一於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 / 朝鮮國議定諸港二於日本國人民貿易規則(修好 條規附錄二附屬スル通商章程)	漢日	
1876.07.06	修好條規附錄에 부속한 往復文書 朝鮮通商의 宿弊芟除에 關한 往復書翰(1876.07.06) 日韓漂民經費償還 件에 關한 往復書翰(1876.08.11)	漢日 漢日	
1876.12.17	釜山口租界條約 /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	漢日	
1877.05.23	辦理漂流船隻章程 / 朝鮮漂流船取扱約定	漢日	
1877.11.16	朝鮮에서 探港中 石炭貯藏 및 運搬約定	漢日	
1878.04.13	商訂償還漂民費用照覆 / 韓國漂流船取扱補約ニ關スル往復文書	漢日	
1879.07.13	元山津開港豫約 / 元山津開港豫約	漢日	
1881.07.10	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 / 元山津居留地地租取極書	漢日	
1882.07.17	修好條規續約	漢日	
1882.07.17	濟物浦條約 / 濟物浦條約(明治十五年京城暴徒事變ニ關スル日韓善後約定) 同條約第三條遭難者에 대한 要償約定(1882.07.17) 同條約第四條年賦支拂約定(1882.9.16) 同條約第四條賠償金の 일부 還付에 關한 往復文書(1884.9.22 / 9.24)	漢 漢 漢 漢日	자료2

\* 이 자료는 근현대사의 한일간 조약을 개관한 것으로 이용할 때는 각항 주에 기재된 조약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1883.01.24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 / 海底電線設置ニ關スル日韓條約	漢日	
1883.06.22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	漢日	
1883.06.22	朝鮮國海關稅則 / 朝鮮國海關稅目	漢日	
1883.06.22	通商章程續約 /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續約	漢日	
1883.06.22	議訂朝鮮國間行里程約條 / 朝鮮國間行里程取極約書	漢日	
1883.06.22	處辦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 / 約定シタル朝鮮國海岸ニ於テ犯罪ノ日本漁民取扱規則	漢日	
1883.08.30	朝鮮國仁川口租界約條 / 朝鮮國仁川港ニ於テ居留地借入約書	漢日	
1884.09.01	龍山을 楊華鎮 대신에 開市場으로 하는 件에 關한 往復文書 (/ 1884.09.06)	漢	
1884.09.03	仁川濟物浦各國居留地約書 / 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	漢英	
1884.10.12	朝鮮國間行里程約條附錄 / 朝鮮國間行里程取極約書附錄	漢日	
1884.11.24	漢城條約 / 漢城條約(明治十七年京城暴徒事變ニ關スル日韓善後約定)	漢日	자료3
1885.06.08	存留派兵護衛之權照會照覆文 / 護衛兵派遣權利保留ニ關スル往復文書	漢日	
1885.11.16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續約 / 海底電線設置條約續約	漢日	
1885.12.27	租借絕影島地基約單 / 絕影島地所借入約書	漢日	
1886.08.10	更訂償完漂民經費之約照覆 / 漂民經費償還法改正ニ關スル往復文書	漢日	
1887.05.11	日韓漂民船貨救撈費償還法取極에 關한 往復文書	漢日	
1888.08.18	辦理通聯萬國電報約定書	漢日	
1889.10.20	貿易規則續約 / 通商章程續約	漢日	
1889.10.20	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 / 日本朝鮮兩國通漁規則	漢日	
1890.12.13	租借月尾島地基約單 / 月尾島地所借入約書	漢日	
1894.07.20	暫定合同條款	漢日	
1894.07.26	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 / 大日本大朝鮮兩國盟約	漢日	
1897.10.16	鎮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 / 鎮南浦及木浦居留地規則	漢英	
1899.06.02	群山浦馬山浦城津各國租界章程 / 群山,馬山浦,城津各國居留地規則	漢英	
1900.09.15	京畿道沿岸에서의 漁業에 關한 往復文 (/ 1900.10.03)	漢日	
1902.05.17	馬山浦專管日本居留地協定書 / 馬山日本專管居留地取極書	漢日	
1904.02.23	議定書(한일의정서) / 日韓議定書	韓日	자료4
1904.03.22	忠淸、黃海、平安道에서의 漁業에 關한 往復文書 (/ 1904.06.04)	漢日	
1904.08.22	協定書(한일협약) / 日韓協約	韓日	자료5
1905.04.01	協定書 / 韓國通信機關委託ニ關スル取極書	韓日	
1905.08.13	約定書 / 韓國沿海及內河ノ航行ニ關スル約定書	韓日	
1905.11.17	韓日協商條約(을사늑약, 을사조약) / 日韓協約	韓日	자료6
1906.10.19	森林經營에 關한 協同約款	韓日	
1907.07.24	韓日協約(정미조약) / 日韓協約	韓日	자료7
1907.10.29	協定書 / 警察事務執行ニ關スル取極書	韓日	
1908.03.20	一時貸付金에 關한 契約	韓日	
1908.03.30	淸津土地管理에 關한 取極書	韓日	
1908.10.31	漁業에 關한 協定	韓日	
1909.03.15	在韓外國人民에 對한 警察事務에 關한 韓日協定書	韓日	
1909.07.12	約定書 / 韓國司法及監獄事務委託ニ關スル覺書	韓日	
1909.07.26	韓國中央銀行에 關한 覺書	韓日	
1910.06.24	韓國警察事務 委託에 關한 覺書 / 韓國警察事務委託ニ關スル覺書	韓日	
1910.08.22	併合條約 / 韓國併合ニ關スル條約	韓日	자료8

## 2.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조약

주) 1. 외교통상부 2005《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4)》및 동《대한민국조약집: 양자조약》각년판에 의거했다. 비고란의 발효년월일이 없는 조약은 즉일 발효된 것이다.

서명연월일	조약명	원문 언어	비고
1957.12.31	<한일 양국 역류자 상호 석방협정 및 한일간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에 수용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에 대한 조치 및 일본국에 수용되어 있는 한인에 대한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각서	英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관계조약>	韓日英	1965.12.18 발효, 자료9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어업협정> 부속서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표지(標識)에 관한 교환공문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조업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아주국장간의 왕복서한 토의기록	韓日	1965.12.18 발효 1999.01.22 실효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경제협력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한·일	1965.12.18 발효 자료10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I)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토의기록	韓日	1966.01.17 발효 자료11 1991.01.10 각서 있음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재·문화협정> 부속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韓日	1965.12.18 발효
1965.06.22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분쟁해결교환공문>	韓日	1965.12.18 발효 자료12
1965.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英	금융협정 (1950.6.2) 등 부록 참조
1966.03.2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韓日·英	
1966.12.0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韓日	
1967.04.2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구역의 범위에 관한 협정	韓日	
1967.04.2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교환공문	韓日	
1967.05.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韓日英	1967.08.30 발효
1967.10.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경복 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68.12.0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69.03.12			
1969.04.0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대한 각서교환	英	
1970.03.03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英	1970.10.29 발효 1991.11.22 신조약 발효에 따라 종료

1970.03.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한미국원조약정	英	
1970.06.0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英	
1970.07.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英	
1971.02.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英	
1971.06.29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은행과 일본 수출입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英	
1971.08.2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英	
1971.12.30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英	
1972.04.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英	
1972.07.0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2.08.05 발효
1972.07.0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英	
1973.01.24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3.01.29 발효
1973.01.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3.02.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관협정(1971)의 개정 협정	英	
1973.12.24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4.01.3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제획정에 관한 협정 합의의사록	英	1978.06.22 발효 자료13
1974.01.3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협정의 합의의사록 굴착의무에 관한 각서교환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각서교환 해수 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8.06.22 발효 자료14  1987.08.31 수정
1974.02.0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英	
1974.02.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관의 개정 협정	英	
1974.06.0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일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4.10.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4.12.2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시설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5.08.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	英	

	용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5.08.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6.03.0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英	
1976.09.0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기재의 지원에 관한 협정	英	
1976.11.1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중복선 복선화 사업에 관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7.02.1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7.08.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7.08.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7.09.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터의 의료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英	
1977.09.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英	
1977.09.3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英	
1978.08.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터의 의료기재 추가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8.12.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9.01.1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79.09.1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英	
1979.12.2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에 따른 차관의 인출 마감일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英	
1980.01.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81.01.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83.10.0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2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84.06.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3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85.03.2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英	
1985.09.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4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85.12.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韓日英	
1987.03.2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英	
1987.08.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英	
1987.08.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英	
1988.04.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5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英	
1988.04.2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英	
1989.06.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6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英	
1990.03.3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英	
1990.05.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각서교환	韓日	
1990.05.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英	
1990.05.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韓日英	
1990.09.1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英	
1990.11.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1.04.15	영친왕비(고 이방자 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	韓日	
1992.03.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英	
1993.04.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英	
1993.06.2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英	
1995.03.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英	
1998.10.0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英	1998.12.07 발효
1998.10.0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의정서	英	1999.11.22 발효
1998.10.0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英	1999.04.01 발효
1998.11.2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어업협정> 부속서 I	韓日	1999.01.22 발효

	부속서 II 합의의사록		자료15
1999.09.1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英	
1999.12.2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英	
1999.12.27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英	
2002.03.2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료간의 투자의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부속서 I 부속서 II 합의의사록	韓日英	2003.01.01 발효
2002.04.0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도조약 토의기록	韓日英 韓日	2002.06.21 발효
2004.02.1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韓日	2005.04.01 발효
2004.12.1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韓日英	
2006.01.2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韓日英	2007.01.26 발효



### 자료1. 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2.3)

大日本國與

大朝鮮國素敦友誼歷有年所今因視兩國情意未洽重修舊好以固親睦是以日本國政府簡特命全權辦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清隆特命副全權辦理大臣議官井上馨詣朝鮮國江華府朝鮮國政府簡判中樞府事申樞副總管尹滋承各遵所奉諭旨議立條款開列于左

第一款 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不可略有侵越猜嫌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一切革除務開擴寬裕弘通之法以期永遠相安

第二款 日本國政府自今十五個月後隨時派使臣到朝鮮國京城得親接禮曹判書商議交際事務該使臣駐留久暫共任時宜朝鮮國政府亦隨時派使臣到日本國東京得親接外務卿商議交際事務該使臣駐留久暫亦任時宜

第三款 嗣後兩國往來公文日本用其國文自今十年間別具譯漢文一本朝鮮用眞文

第四款 朝鮮國釜山草梁項立有日本公館久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今應革除從前慣例及歲遣船等事憑準新立條款措辦貿易事務且朝鮮國政府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就該地賃借地基造營家屋或僑寓所在人民屋宅各隨其便

第五款 京畿忠清全羅慶尙咸鏡五道中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指定地名開口之期日本曆自明治九年二月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算共爲二十個月

第六款 嗣後日本國船隻在朝鮮國沿海或遭大風或薪糧窮竭不能達指定港口即得入隨處沿岸支港避險補缺修繕船具買求柴炭等其在地方供給費用必由船主賠償凡是等事地方官民須特別加意憐恤救援無不至補給勿敢吝惜倘兩國船隻在洋破壞舟人漂至隨處地方人民即時救恤保全稟地方官該官護還其本國或交付其就近駐留本國官員

第七款 朝鮮國沿海島嶼巖礁從前無經審檢極爲危險準聽日本國航海者隨時測量海岸審其位置深淺編製圖志俾兩國船客以得避危就安

第八款 嗣後日本國政府於朝鮮國指定各口隨時設置管理日本國商民之官遇有兩國交涉案件會商所在地方長官辦理

第九款 兩國既經通好彼此人民各自任意貿易兩國官吏毫無干預又不得限制禁阻倘有兩國商民欺罔街賣貸借不償等事兩國官吏嚴拿該逋商民令追辦債欠但兩國政府不能代償

第十款 日本國人民在朝鮮國指定各口如其犯罪交涉朝鮮國人民皆歸日本國審斷如朝鮮國人民犯罪交涉日本國人民均歸朝鮮官查辦各據其國律訊斷毫無回護袒庇務昭公平允當

第十一款 兩國既經通好須另設立通商章程以便兩國商民且併現下議立各條款中更應補添細目以便遵照條件自今不出六個月兩國另派委員會朝鮮國京城或江華府商議定立

第十二款 右十一款議定條約以此日爲兩國信守遵行之始兩國政府不得復變革之永遠信遵以敦和好矣爲此作約書二本兩國委任大臣各鈐印互相交付以昭憑信

大朝鮮國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二月初二日

大官 判中樞府事 申櫛

副官 都總府副總管 尹滋承

大日本國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明治九年二月二十六日

大日本國特命全權辦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 黑田清隆

大日本國特命副全權辦理大臣議官 井上馨

## 자료2. 濟物浦條約 (1882.7.27)

(日本曆七月二十三日·朝鮮曆六月九日)之變朝鮮兇徒侵襲日本公使館職事人員致多罹難朝鮮國所聘日本陸軍教師亦被慘害日本國爲重和好妥當議辨即約朝鮮國實行下開六款及別訂續約

以款以表懲前善後之意於是兩國全權大臣記名盖印以昭信憑

第一

自今期二十日朝鮮國捕獲兇徒嚴究渠魁從重懲辦事  
日本國派員眼同究治若期內未能捕獲應由日本國辦理

第二

日本官胥遭害者由朝鮮國優禮瘞葬以厚其從事

第三

朝鮮國撥支五萬圓給與日本官胥遭害者遺族並負傷者以加體卹事

第四

因兇徒暴舉日本國所受損害及護衛公使水陸兵費內五十萬圓由朝鮮國填補事  
每年支十萬圓待五個年清完

第五

日本公使館置兵員若干備警事  
設置修繕兵營朝鮮國任之  
若朝鮮國兵民守律一年之後日本公使館視做不要警備不妨撤兵

第六

朝鮮國特派大官修國書以謝日本國事

大日本國 明治十五年 八月 三十日

大朝鮮國 開國四百九十一年 七月 二十七日

日本國辦理公使 花房義質

朝鮮國全權大臣 李裕元

朝鮮國全權副官 金宏集

### 자료3. 漢城條約 (1884.11.24)

此次京城事變 所係非小 大日本國大皇帝深軫宸念 茲簡特派全權大使伯爵井上馨 至大朝鮮國 便宜處理 大朝鮮國大君主 宸念均願敦好 乃委金弘集 以全權議處之任 命以懲前毖後之意

兩國大臣和衷商辦作下約款 以昭好誼完全 又以防將來事端 茲據全權文憑 各簽名鈐印如下

第一條 朝鮮國修國書 致日本國 表明謝意事

第二條 恤給此次日本國遭害人民遺族並負傷者 暨填補商民貨物 毀損掠奪者 由朝鮮國撥支給拾壹萬圓事

第三條 殺害磯林大尉之兇徒 查問捕拿從重正刑事

第四條 日本公館要移新基建築 當由朝鮮國交附地基房屋足容公館 暨領事館至其修築增建之處 朝鮮國更撥交貳萬圓 以充工費事

第五條 日本護衛兵辨營舍 以公館敷地擇定 照壬午續約 第五款 施行事

大朝鮮國 開國四百九十三年十一月二十四日 特派全權大臣左議政 金弘集

大日本國 明治十八年一月九日 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 井上馨

另 單

一. 約款第二·第四條全圓 以日本銀貨算 須期三箇月 於仁川撥完

一. 第三條兇徒處辨 以立約後二十日爲期

大朝鮮國 開國四百九十三年十月二十四日 特派全權大臣左議政 金弘集

大日本國 明治十八年一月九日 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 井上馨

#### 자료4. 議定書(한일의정서) (1904.2.23)

大韓帝國皇帝陛下의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及大日本帝國皇帝陛下의 特命全權公使林權助는 各相當의 委任을 受호야 左開條件을 協定함

第一條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에 親交를 保持호고 東洋和平을 確立함을 爲호야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確信호야 施政改善에 關호야 其忠告를 容호일 事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皇室을 確實호 親誼로 安全康寧케호일 事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獨立及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호일 事

第四條 第三國의 侵害에 由호며 或은 內亂을 爲호야 大韓帝國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에 危險이 有호일 境遇에는 大日本帝國政府는 速히 臨機必要호 措置를 行호일 可

흡 然大韓帝國政府는 右大日本帝國에 行動을 容易함을 爲호야 十分便宜를 與호  
事大日本帝國政府는 前項目的을 成就함을 爲호야 軍略上必要호 地點을 隨機取用  
함을 得호 事

第五條 大韓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는 相互間에 承認을 不經호야 後來에 本協定趣意  
에 違反호 協約을 第三國間에 訂立함을 得치못호 事

第六條 本協約에 關聯호는 未悉細條는 大日本帝國代表者와 大韓帝國外部大臣間隨機協定  
호 事

光武八年二月二十三日

明治三十七年二月二十三日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자료5. 協定書(한일협약) (1904.8.22)

- 一. 大韓政府는 大日本政府가 推薦호는 日本人一名을 財政顧問으로 호야 大韓政府에 傭聘  
호야 財務에 關호는 事項은 一切其意見을 詢호야 施行호 事
- 一. 大韓政府는 大日本政府가 推薦호는 外國人一名을 外交顧問으로 호야 外部에 傭聘호  
야 外交에 關호는 要務는 一切其意見을 詢호야 施行호 事
- 一. 大韓政府는 外國과 修約을 締結호며 其他重要호 外交案件 卽外國人에 對호는 特權讓  
與와 契約等事處理에 關호야는 미리 大日本政府와 商議호 事

光武八年八月二十二日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

外部大臣署理尹致昊

特命全權公使林權助

### 자료6. 韓日協商條約(을사늑약, 을사조약) (1905.11.7)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는 兩帝國을 結合호는 利害共通의 主義를 鞏固케함을 欲호야 韓國  
의 富強之實을 認호 時에 至호가지 此目的으로며 左開條款을 約定호.

第一條 日本國政府는 在東京外務省을 由호야 今後에 韓國이 外國에 對호는 關係及事務  
를 監理指揮함이 可호고 日本國의 外交代表者及領事는 外國에 在호는 韓國의 臣

民及利益을 保護함이 可함

第二條 日本國政府는 韓國과 他國間에 現存하는 條約의 實行을 完全히 하는 任에 當하고 韓國政府는 今後에 日本國政府의 仲介에 由치 아니하고 國際的 性質을 有하는 何等條約이나 又約束을 아니함을 約함

第三條 日本國政府는 其代表者로 하여 韓國皇帝陛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을 置히디 統監은 專히 外交에 關하는 事項을 管理함을 爲하여 京城에 駐在하고 窺히 韓國皇帝陛下에게 內謁하는 權利를 有함. 日本國政府는 又 韓國의 各 開港場及其他 日本國政府가 必要로 認하는 地에 理事官을 置하는 權利를 有히디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之下에 從來 在韓國 日本領事에게 屬하든 一切職權을 執行하고 并하여 本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함을 爲하여 必要로 하는 一切事務를 掌理함이 可함.

第四條 日本國과 韓國間에 現存하는 條約及約束은 本協約條款에 抵觸하는 者를 除하는 外에 總히 其效力을 繼續하는 者로 함.

第五條 日本國政府는 韓國 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함을 保證함.

右証據로 하여 名은 各本國政府에서 相當한 委任을 受하여 本協約이 記名調印함.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자료7. 韓日協約(정미조약) (1907.7.24)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는 速히 韓國의 富強을 圖하고 韓國國民의 幸福을 增進하고자 하는 目的으로 左開條款을 約定함.

第一條 韓國政府는 施政改善에 關하여 統監의 指導를 受할 事.

第二條 韓國政府의 法令의 制定及重要한 行政上의 處分은 豫히 統監의 承認을 經할 事.

第三條 韓國의 司法事務는 普通行政事務와 此를 區別할 事.

第四條 韓國 高等官吏의 任免은 統監의 同意로써 此를 行할 事.

第五條 韓國政府는 統監의 推薦한 日本人을 韓國官吏에 任命할 事.

第六條 韓國政府는 統監의 同意없이 外國人을 傭聘아니할 事.

第七條 明治三十七年 八月 二十二日 調印한 日韓協約 第一項을 廢止할 事.

右爲證據함으로 下名은 各本國政府에서 相當한 委任을 受히야 本協約에 記名調印함 이라.

光武十一年七月二十四日                      明治四十年七月二十四日  
內閣總理大臣勳二等 李完用 官章              統監候爵 伊藤博文 官印

### 자료8. 併合條約 (1910.8.22)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는 兩國間의 特殊히 親密한 關係를 顧히야 互相幸福을 增進히며 東洋平和를 永久히 確保히기 爲히야 此目的을 達코자 韓國을 日本國에 併合함에 不如할 者로 確信히야 茲에 兩國間에 併合條約을 締結함으로 決定히니 爲此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日本國皇帝陛下는 統監 子爵 寺內正毅를 各其 全權委員에 任命함 仍히야 右全權委員은 會同協議히야 左開諸條를 協定함.

第一條 韓國白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統治權을 完全 且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에 掲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且全然 韓國을 日本帝國에 併合함을 承諾함.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는 韓國皇帝陛下 太皇帝陛下 皇太子 殿下 竝 其后妃及後裔를 各其 地位를 應히야 相當한 尊稱威嚴과 及 名譽를 享有케 하고 且 此를 保持함에 十分한 歲費를 供給함을 約함.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及其後裔에對히야 各相當한 名譽及待遇를 享有케 하고 且 此를 維持히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함을 約함.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勳功이 有한 韓人으로 特히 表彰함을 適當할 由로 認할 者에對히야 榮爵을 授하고 且 恩金을 與함.

第六條 日本國政府는 前記 併合의 結果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히야 該地에 施行함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及財産에 對히야 十分한 保護를 與하고 且 其福利의 增進을 圖함.

第七條 日本國政府는 誠意忠實히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 相當한 資格이 有한 者를

事情이 許할 範圍에서 韓國에 在 皇帝國官吏에 登用함.

第八條 本條約은 韓國皇帝陛下 及 日本國皇帝陛下의 裁可를經 者-니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右證據로삼아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調印함이라.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 完 用 官章

統監 子爵 寺內正毅 官印

### 자료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일본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 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요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 자료1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 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요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 자료1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 (a) 1954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 제 3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 (a)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 (b)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민국의 송금에 관한 사항

### 제 5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요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자료12. 분쟁의 해결에 관한(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1965.6.22)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본관은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본관은 또한 각하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할 것을 희망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포함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스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일본측 서한

(번역문)

1965년 6월 22일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서한).....”

본 대신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자료1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1974.1.30)**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의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각각 행사하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경계를 획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간의 경계선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 제2점 북위 32°57.5′ 동경 127°41.9′
- 제3점 북위 33°01.3′ 동경 127°44.0′
- 제4점 북위 33°08.7′ 동경 127°48.3′
- 제5점 북위 33°13.6′ 동경 127°51.6′
- 제6점 북위 33°16.2′ 동경 127°52.3′
- 제7점 북위 33°45.1′ 동경 128°21.7′
- 제8점 북위 33°47.4′ 동경 128°25.5′
- 제9점 북위 33°50.4′ 동경 128°25.1′



제10점	북위	34°08.2′	동경	128°41.3′
제11점	북위	34°13.0′	동경	128°47.6′
제12점	북위	34°18.0′	동경	128°52.8′
제13점	북위	34°18.5′	동경	128°53.3′
제14점	북위	34°24.5′	동경	128°57.3′
제15점	북위	34°27.6′	동경	128°59.4′
제16점	북위	34°29.2′	동경	129°00.2′
제17점	북위	34°32.1′	동경	129°00.8′
제18점	북위	34°32.6′	동경	129°00.8′
제19점	북위	34°40.3′	동경	129°03.1′
제20점	북위	34°49.7′	동경	129°12.1′
제21점	북위	34°50.6′	동경	129°13.0′
제22점	북위	34°52.4′	동경	129°15.8′
제23점	북위	34°54.3′	동경	129°18.4′
제24점	북위	34°57.0′	동경	129°21.7′
제25점	북위	34°57.6′	동경	129°22.6′
제26점	북위	34°58.6′	동경	129°25.3′
제27점	북위	35°01.2′	동경	129°32.9′
제28점	북위	35°04.1′	동경	129°40.7′
제29점	북위	35°06.8′	동경	130°07.5′
제30점	북위	35°07.0′	동경	130°16.4′
제31점	북위	35°18.2′	동경	130°23.3′
제32점	북위	35°33.7′	동경	130°34.1′
제33점	북위	35°42.7′	동경	130°42.7′
제34점	북위	36°03.8′	동경	131°08.3′
제35점	북위	36°10.0′	동경	131°15.9′

2. 경계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된다.

제 2 조

해상하에 광물이 부존하는 단일의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있고 경계선

의 한 측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문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삼자의 중재에 부탁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제 3 조

본 협정은 상부 수역 또는 상부 공간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는, 오늘 서명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체결 교섭 중 도달한 다음의 양해 사항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1. 협정 제1조제1항에 표시된 좌표는 일본 해상보안청 해도 제302호, 1958년 11월, 제5판과 제1,200호, 1958년 7월, 제2판에 근거한다.
2.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 정부는 어업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협정의 대상인 구역내 에서의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 1974년 1월 30일

자료1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1974.1.30)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구역에서 석유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함이 그들의 공통된 이익임을 고려하며, 그러한 자원개발 문제의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에 도달할 것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본 협정의 목적상

- (1) “천연자원”이라 함은 석유(천연가스 포함)자원 및 동 자원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타 지하광물을 의미한다.
- (2) “조광권자”라 함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의하여 공동개발 구역내의 천연 자원을 탐사 또는 채취하도록 허가한 자를 의미한다.
- (3)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라 함은 공동개발 구역의 동일한 소구역에 관하여 각각 허가를 받은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와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를 의미한다.
- (4) “운영계약”이라 함은 공동개발 구역내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채취할 목적으로 양당사국의 조광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 (5) “운영자”라 함은 공동개발구역의 소구역에 관하여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권자를 의미한다.

제 2 조

1. 공동개발 구역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되는 대륙붕 구역으로 한다.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 제2점 북위 32°53.4′ 동경 127°36.3′
- 제3점 북위 32°46.2′ 동경 127°27.8′
- 제4점 북위 32°33.6′ 동경 127°13.1′
- 제5점 북위 32°10.5′ 동경 126°51.5′
- 제6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 제7점 북위 30°33.3′ 동경 126°00.8′
- 제8점 북위 30°18.2′ 동경 126°05.5′
- 제9점 북위 28°36.0′ 동경 127°38.0′
- 제10점 북위 29°19.0′ 동경 128°00.0′
- 제11점 북위 29°43.0′ 동경 128°38.0′
- 제12점 북위 30°19.0′ 동경 128°09.0′
- 제13점 북위 30°54.0′ 동경 129°04.0′
- 제14점 북위 31°13.0′ 동경 128°50.0′
- 제15점 북위 31°47.0′ 동경 128°50.0′
- 제16점 북위 31°47.0′ 동경 128°14.0′
- 제17점 북위 32°12.0′ 동경 127°50.0′
- 제18점 북위 32°27.0′ 동경 127°56.0′
- 제19점 북위 32°27.0′ 동경 128°18.0′
- 제20점 북위 32°57.0′ 동경 128°18.0′
- 제2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2. 공동개역을 획정하는 직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한다.

### 제 3 조

1. 공동개발구역은 소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소구역은 양당사국의 조광권자에 의하여 탐사되고 채취된다.
2. 각 소구역은 본 협정 부록에 경위도 좌표를 인용함으로써 번호를 매겨 확정하여야 한다.

부록은 본 협정의 수정없이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3개월 이내에 각 소구역에 관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당사국이 한 소구역에 관하여 2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광권자들은 불가분의 권익을 가지며 본 협정의 목적상 한 조광권자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 조광권자 또는 소구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새로이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운영계약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제9조에 의한 천연자원과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 (b) 운영자의 지정
- (c) 단독 위험부담작업의 취급
- (d) 어업상 권익의 조정
- (e) 분쟁의 해결

2. 운영계약과 그 수정은 당사국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동 운영계약 또는 그 수정은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 후 2개월내에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승인을 거부하지 않는 한 당사국으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본다.

3.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동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1. 운영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다.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내에 운영자의 지정에 관하여 그들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운영자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간 협의를 개시된 후 2개월내에도 운영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추첨에 의하여 운영자를 결정한다.

2. 운영자는 운영계약에 따라 모든 작업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며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고용하고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출, 변제하며 또한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 자재 기타 수송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취득한다.

제 7 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필요한 건물, “프랫홈”, “탱크”, “터미널”과 기타 시설물을 타방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동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득, 건조, 유지,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다.

제 8 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의무가 본 협정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동 타방당사국 조광권자의 자국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 9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을 각각 동등하게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동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귀속시킴이 합리적이라고 고려되는 비용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한다.

제 10 조

1. 본 협정에 의한 조광권자의 권리는 탐사권과 채취권으로 한다.
2.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본조제4항(3)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8년으로 한다.
3.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동 권리의 설정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5년간의 추가기간 연장을 각 당사국에 신청할 수 있다. 동 신청은 필요한 한 무한정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당사국은 동 신청을 접수하면 동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4. (1) 탐사권 존속기간중 천연자원의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각 당사국에 채취권의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국은 동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협의하고 지체없이 동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진 것을 당사국이 인지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계 조광권자에게 채취권 설정신청을 출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조광권자는 그 요청을 받은 후 3개월내에 동 신청을 출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탐사권 기간중 채취권이 설정되면 탐사권 기간은 동일로서 종료한다.
5.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기간은 최초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기간만료일에 종료한다.
6.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은 본 협정 및 운영계약에 의한 동 조광권자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인과 동일한 소구역에 관하여 허가받은 타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 전체로서 이전될 수 있다.

제 11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당사국간에 체결될 별도의 약정에 따라 탐사권 기간중 수개의 유정을 굴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소구역에 관하여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다음 3년 및 잔여 2년의 각 기간중 2개 공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국은 각 소구역에서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에 관하여 합의할 때에 각 소구역의 넓이와 상부수역의 깊이를 참작한다.

2.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본조제1항에 언급된 어느 기간중 의무를 초과하여 유정을 굴착할 경우에는 동 초과 유정수는 그 계승기간중에 굴착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6개월이상 작업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1. 본조제2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원래의 소구역의 25%를, 6년내에 동 소구역의 50%를, 8년내에 동 소구역의 75%를 포기하여야 한다.
2. 포기할 구역의 넓이, 형태 및 위치와 포기시기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75km<sup>2</sup>이하의 단일구역은 본조제3항에 의한 경우외에는 포기할 수 없다.
3.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본조제1항에 포기할 구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으로 포기 제안한 구역 및 각각 포기 제안한 구역의 50%를, 포기할 전 구역이 가능한 한 단일구역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 포기기간 만료일에 포기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포기가 제안된 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각각 포기 제안한 구역의 50%를 포기하여야 한다.
4.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본조제2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구역이라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5. 본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광권자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관계 전 소구역을 포기할 수 있다.

제 14 조

1. 일방당사국은 자국의 조광권자가 본 협정 또는 운영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타방당사국과의 협의 후, 조광권자 보호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동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2. 일방당사국이 자국 법규에 따라 그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동 취소 15일전에 타방당사국에 그의 의도를 통고하여야 한다.
3. 일방당사국에 의한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는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 15 조

1.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제13조제5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전 소구역에 포기한 경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제14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또는 일방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소멸된 경우(이하 이러한 조광권자를 “전조광권자”라 함)에는 관계 소구역의 잔여 조광권자는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할 때까지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동 잔여조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 위험부담 작업조항 및 기타 관련규정의 조건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목적상 잔여 조광권자는 조광권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그 자신이 조광권자 자격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조광권자로 본다. 이 규정은 잔여 조광권자의 본조제1항에 의한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한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방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한 경우에는 신 조광권자와 잔여 조광권자는 새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잔여 조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에 기속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개시한 잔여 조광권자는 자신과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위험 부담 작업조항의 조건에 따라 위에 언급된 새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탐사와 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



제 16 조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에 대한 각 당사국의 법규적용에 있어서 제9조에 의해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동 천연자원의 몫은 동 당사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 대륙붕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으로 본다.

제 17 조

1. 어느 당사국(지방당국을 포함함)도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a) 공동개발구역내의 탐사 또는 채취작업
  - (b) 동 작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 (c) 동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동개발구역내의 고정자산의 소유
  - (d) 동 조광권자가 허가된 소구역
2. 각 당사국(지방당국을 포함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그의 조광권자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a) 공동개발구역내의 탐사 또는 채취작업
  - (b) 동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동개발구역내의 고정자산의 소유
  - (c) 동 조광권자가 허가된 소구역

제 18 조

관세와 수출입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규 적용에 있어서

-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기타 물품(이하 "장비"라 함)의 공동개발구역내로의 도입 및 그 구역내에서의 장비의 사용 또는 그 구역으로부터 장비의 이전은 수입 또는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
- (2) 일방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으로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장비를 수송하는 것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출 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일방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으로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자에게 동 당사국은 그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본조(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3)에 언급된 장비를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그 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출로 본다.

제 19 조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당사국의 법규는 동 당사국이 허가한 조광권자가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소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 20 조

당사국은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련된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해수오염을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 21 조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 인한 손해가 일방당사국 국민 또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에게 가하여진 경우에는 동 국민 또는 동 기타인은
  - (a) 그 영역내에서 동 손해가 발생한 당사국의 법원
  - (b) 그 영역내에 동 국민 및 기타인이 거주하는 당사국의 법원 또는
  - (c) 동 손해의 원인인 사건이 발생한 소구역에서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법원에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당사국의 법원은 그 당사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3. (1) 본조제1항에 언급된 손해가 해상 및 하층토의 굴착작업, 광수 또는 폐수의 방기로 인한 경우에는
  - (a)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
  - (b)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조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가장 최근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졌던 조광권자 또는
  - (c)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자가 단지 2인인 경우에 동 조광권자와 제15조제1항에 정의된 전 조광권자는 본조제2항에 의한 적용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동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본항(1)의 목적상, 본항(1)에 언급된 손해의 발생후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양도한 조광권자와 동 양도에 의하여 탐

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득한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22 조

1. 각 당사국은 공동개발 구역내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고정 시설상의 무선국에 주파수를 지정할 때는 동 지정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타방당사국에 동 주파수, 전송형식과 출력, 무선국의 위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상기 사항에 관한 그후의 변경도 타방당사국에 위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상기 구체적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

1. 천연자원의 단일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선에 걸쳐있고 동선의 한쪽에 존재하는 동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동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국에 의해 동 구조 또는 광상의 채취를 허가받는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하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라 함)은 협의를 통하여 동 구조 또는 광상을 채취함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1)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 동 협의가 개시된 후 6개월내에 본조제1항에 언급된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조광권자 및 기타인으로 하여금 동 방법에 관한 공동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동 방법에 관한 합의가 조광권자 및 기타인의 전부 또는 일부간에 성립한 경우에는 동 합의(그 수정포함)는 양 당사국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동 합의는 본조제3항에 따른 천연자원 및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3.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에 의한 채취의 경우에는 동 구조 또는 광상으로부터 산출된 천연자원 및 채취에 귀속시킴이 합리적이라고 고려되는 비용은 조광권자 및 기타인이 각 당사국으로부터 조광권을 허가받은 구역내에 존재하는 동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내의 생산가능 매장량의 비율에 따라 그들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4. 본조의 상기 각항의 규정은 공동개발구역의 소구역을 경계짓는 선에 걸쳐있는 천연자원의 단일 지질구조 또는 광상의 채취에 관하여 준용된다.

5. (1) 제16조의 목적상,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으로서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광권을 허가받는 자(조광권자 이외의)가 본조제3항 및 본조제2항(2)에 언급된 합의에 의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몫은 동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의 몫과 같은 것으로 본다.
- (2) 제17조의 목적상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광권을 허가받고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의 당사자인 자(조광권자 이외의)는 동 당사국의 조광권자로 본다.
- (3) 어느 당사국도(지방당국을 포함함)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a)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에 따라 공동개발구역 밖에서 수행하는 채취작업
  - (b) 동 작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또는
  - (c) 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자산의 소유

제 24 조

1.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서 한·일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개의 국별위원부로 구성하며 각 국별위원부는 각 당사국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위원부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그 회의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거나 이를 개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며 일방 국별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합한다.
6.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위원부에서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은 각 당사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가 필요함을 결정할 때에는 동 경비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한 당사국이 승인한 당사국의 부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제 25 조

1.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a) 본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본 협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하고 당사국에 권고함
  - (b) 당사국이 매년 제출하는 조광권자의 기술 및 재정보고서를 접수함
  - (c) 조광권자간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당사국에 권고함
  - (d)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위한 운영자의 작업 및 시설물 기타 설치물을 관찰함
  - (e)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당사국 법규적용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사국에 권고함
  - (f) 당사국이 제출한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하여 당사국이 공포하는 법규에 관한 통고를 접수함
  - (g)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기타 문제를 토의함
2. 당사국은 본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26 조

1. 본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부탁한다.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는 일방당사국의 각서가 타방당사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며 제삼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후 30일의 기간내에 위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동 기간내에 동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한 제삼국 정부가 임명한다.
3. 각 당사국이 임명한 중재위원이 본조제2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제삼의 중재위원 혹은 제삼국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국은 국제사법 법원장에게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제삼의 중재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본조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는 항해나 어로와 같이 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내의 다른 정당한 작업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 28 조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동개발 구역의 전부나 어느 부분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확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 29 조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

당사국은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1 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그후 본조제3항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3.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3년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시에 혹은 그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이 공동개발구역내에서 천연자원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채취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본 협정을 개정하거나 종료시킬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개정 혹은 종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두통을 작성하였다.

부 록

소구역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각각 획정되는 공동개발구역의 제구역으로 한다.

소구역 I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3.0′
- 제2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 제3점 북위 32°39.6′ 동경 127°39.2′
- 제4점 북위 32°38.6′ 동경 127°39.2′
- 제5점 북위 32°39.1′ 동경 127°18.0′
- 제6점 북위 32°57.0′ 동경 128°18.0′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3.0′

소구역 II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 제2점 북위 32°53.4′ 동경 127°36.3′
- 제3점 북위 32°48.1′ 동경 127°30.0′
- 제4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 제5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 제6점 북위 32°57.0′ 동경 127°43.0′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소구역 III

- 제1점 북위 32°48.1′ 동경 127°30.0′
- 제2점 북위 32°46.2′ 동경 127°27.8′
- 제3점 북위 32°40.2′ 동경 127°20.8′
- 제4점 북위 32°40.3′ 동경 127°25.7′
- 제5점 북위 32°39.4′ 동경 127°25.7′
- 제6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 제1점 북위 32°48.1′ 동경 127°30.0′

소구역 IV

- 제1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제2점 북위 32°35.0′ 동경 127°30.0′

제3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제1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소구역 V

제1점 북위 32°40.2′ 동경 127°20.8′

제2점 북위 32°33.6′ 동경 127°13.1′

제3점 북위 32°10.5′ 동경 126°51.5′

제4점 북위 30°53.1′ 동경 126°00.0′

제5점 북위 30°35.2′ 동경 126°00.0′

제6점 북위 30°33.3′ 동경 126°00.8′

제7점 북위 30°31.0′ 동경 126°01.5′

제8점 북위 30°31.0′ 동경 126°43.0′

제9점 북위 31°56.0′ 동경 126°07.0′

제10점 북위 32°35.0′ 동경 127°30.0′

제11점 북위 32°39.5′ 동경 127°30.0′

제12점 북위 32°39.4′ 동경 127°25.7′

제13점 북위 32°40.3′ 동경 127°25.7′

제1점 북위 32°40.2′ 동경 120 20.8′

소구역 VI

제1점 북위 30°53.1′ 동경 126°00.0′

제2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제3점 북위 30°35.2′ 동경 126°00.0′

제1점 북위 30°53.1′ 동경 126°00.0′

소구역 VII

제1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제2점 북위 32°35.0′ 동경 127°30.0′

제3점 북위 31°56.0′ 동경 127°07.0′

제4점 북위 30°31.0′ 동경 126°43.0′

제5점 북위 30°31.0′ 동경 126°01.5′

제6점 북위 30°18.2′ 동경 126°05.5′



- 제7점 북위 29°38.6′ 동경 126°41.8′
- 제8점 북위 29°39.7′ 동경 127°45.4′
- 제9점 북위 31°47.0′ 동경 128°32.6′
- 제10점 북위 31°47.0′ 동경 128°14.0′
- 제11점 북위 32°12.0′ 동경 127°50.0′
- 제12점 북위 32°27.0′ 동경 127°56.0′
- 제13점 북위 32°27.0′ 동경 128°18.0′
- 제14점 북위 32°39.1′ 동경 128°18.0′
- 제15점 북위 32°38.6′ 동경 127°39.2′
- 제16점 북위 32°39.6′ 동경 127°39.2′
- 제1점 북위 32°39.5′ 동경 127°32.6′

소구역 Ⅷ

- 제1점 북위 31°47.0′ 동경 128°32.6′
- 제2점 북위 29°39.7′ 동경 127°45.4′
- 제3점 북위 29°38.6′ 동경 126°41.8′
- 제4점 북위 28°56.6′ 동경 127°19.6′
- 제5점 북위 29°08.9′ 동경 127°32.6′
- 제6점 북위 29°09.0′ 동경 127°40.1′
- 제7점 북위 29°21.4′ 동경 127°58.3′
- 제8점 북위 29°47.2′ 동경 127°57.9′
- 제9점 북위 30°16.8′ 동경 128°16.2′
- 제10점 북위 30°16.9′ 동경 128°32.0′
- 제11점 북위 30°57.4′ 동경 129°01.5′
- 제12점 북위 31°13.0′ 동경 128°50.0′
- 제13점 북위 31°47.0′ 동경 128°50.0′
- 제1점 북위 31°47.0′ 동경 128°30.6′

소구역 Ⅸ

- 제1점 북위 30°57.4′ 동경 129°01.5′
- 제2점 북위 30°16.9′ 동경 128°32.0′
- 제3점 북위 30°16.8′ 동경 128°16.2′

- 제4점 북위 29°47.2′ 동경 127°57.9′
- 제5점 북위 29°21.4′ 동경 127°58.3′
- 제6점 북위 29°09.0′ 동경 127°40.1′
- 제7점 북위 29°08.9′ 동경 127°32.6′
- 제8점 북위 28°56.6′ 동경 127°19.6′
- 제9점 북위 28°36.0′ 동경 127°38.0′
- 제10점 북위 29°19.0′ 동경 128°00.0′
- 제11점 북위 29°43.0′ 동경 128°38.0′
- 제12점 북위 30°19.0′ 동경 129°09.0′
- 제13점 북위 30°54.0′ 동경 129°04.0′
- 제1점 북위 30°57.4′ 동경 129°01.5′

### 자료1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11.28)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 2 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 제 3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

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 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입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 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 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 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7 조

1.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 너.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 러. 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 머. 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 버. 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 저.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 차.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 커. 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 터. 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 펴. 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 허.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 고. 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 노. 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 도. 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 로. 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 모. 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 보. 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 소.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 나.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 9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 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 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네.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 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제 10 조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 11 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 12 조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룬다.

제 13 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 이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후 30일 이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 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제 14 조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부속서』

부속서 I

1. 양 체약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사항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 부속서 II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 부록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조약 및 관련문서\*

서명연월일	조약명	비고
1950.06.02/1950.06.06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1950.04.01부터 발효
1950.06.02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1950.04.01부터 발효
1950.06.02/1950.06.08	각서 : 대한민국 및 점령하 일본간의 특정상품의 교역	
1950.06.02/1950.06.08	각서 : 대한민국 및 점령하 일본간의 통상, 재정협정의 해석	
1950.04.15/1951.10.04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1950.10.04 발표
1951.06.18	각서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통상급 재정협정에서 사용된 역무라는 용어의 해석	
1951.04.23	한일무역계획(1951.4.1 - 1952.3.31)	
1951.11.07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 중의 제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1951.11.07 발효
1952.03.11 1952.03.22	대한민국 주일대표부로부터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추산의 조정”에 관한 서한 일본 외무대신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에게 보낸 “추산의 조정”에 관한 서한	
1952.03.27	연합군최고사령부 경제과학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단장에게 보낸 ‘한국과 점령하 일본과의 무역계획’에 관한 각서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단장으로부터 연합군최고사령부 경제과학국장에게 보낸 ‘한국과 점령하 일본과의 무역계획’에 관한 각서	
1954.04.28	각서교환	

\* 외교통상부 2005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4)》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